외국 조세 목적의 은행 비밀주의 종언: 실무상 시사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은행, 신탁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

이러한 규정들이 누적된 결과, 싱가포르 금융기관은 모든 고객에 대해 그 고객의 세법상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자산이 탈세 수익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은행, 인가 신탁회사 및 펀드매니저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편 제III장과 제V장에서 다루는 패밀리 오피스와 외부 자산운용사에 관한 제도는 각기 고유한 요건을 추가합니다. 2024년 위험평가는 신탁회사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전문 중개인이 외국 조세 범죄 수익의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1]

고객과 그 자문인의 경우

고객에게 실무상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싱가포르에 보유한 모든 계좌는 고객의 거주국 과세당국이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 예외는 현재의 아랍에미리트처럼 그 국가가 싱가포르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밖에 있는 경우뿐입니다. 미국인(US persons)의 계좌는 FATCA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구조를 이용해도 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동적 법인과 신탁은 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를 기준으로 투시되기 때문입니다.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약정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05MA에 따라 무시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서 비롯된 자산의 은닉을 돕는 자문인은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DSA)의 자금세탁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모든 계좌 보유자, 지배자, 설정자, 수익자 및 보호자(Protector)의 세법상 거주지를 확인하고, 자기확인서와 증빙자료로 이를 문서화합니다.
- 거주 관할권이 IRAS의 현행 보고대상 관할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계좌가 FATCA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 각 신규 고객에 대해 MAS 고시 제626호 지침 부록 B의 징후를 활용하여 자산의 조세상 적법성과 그 자산을 싱가포르에 계상하는 이유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 외국 조세사면 참여를 보고 사유로 취급하여 필요한 의심거래보고를 하고, 계좌 검토 여부를 위험기반으로 결정합니다.
- 포탈된 외국 세금에 상응하는 세금이 싱가포르에 없는 경우에도 위험통제를 적용하고, 자발적 보고를 하기 전에 법정 보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계좌를 CRS 또는 FATCA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약정은 피합니다. 국세청장(Comptroller)이 이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편물 보관(hold-mail)이나 휴면계좌와 같은 레거시 서비스를 검토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통제를 받도록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CRS와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에 대비합니다. CARF의 최초 정보교환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Money Laundering National Risk Assessment 2024*, para. 6.2.18: "Professional intermediaries such as trust companies and asset managers may also be misused"; 복잡한 소유·지배 구조를 통해 자금을 보유하는 데 이용되는 법인 및 법률관계.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